

교육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라 한다.

제2조 (임무)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교육정책 수립과 총회 교육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1. 총회 교육국과 교육위원회의 협의회를 실시한다.
2. 교회학교교사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15인으로 조직한다.

1. 28개 노회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 순차적으로 2개 조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1) 서울북, 서울동, 강원, 대전광역시, 전북, 군산, 경남
 - 2) 서울, 서울남, 경기중부, 충남, 전북동, 전남, 대구
 - 3) 경기남, 인천, 충북, 목포, 광주남, 경북, 제주
 - 4) 경기, 경기북, 대전, 익산, 전남서, 광주, 부산
2. 각 노회별 1인과 여성위원 1인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첫 공천에서 년조를 나누어 공천한다. 임기는 총회 후 첫 정기회부터 기산한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의 임원을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소위)

본 위원회는 연구 및 업무의 효율과 편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위원회)

목회자 계속교육 운영을 위하여

1. 교육 기관 전문인 5인
(총회 총무, 총회 교육국 2인, 한신대 신학대학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2. 상임위원회 위원 5인
(교육위원회 3인, 양성평등위원회 1인, 영성수련원운영위원회 1인)
3. 현장 목회자 추천 5인(여성 2인 이상) 총 15인으로 구성된 계속교육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교회교육전문가과정 운영위원회)

본 위원회는 교회교육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교회교육전문가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장 회 의

제9조 (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개정 절차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제92회 총회 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 개정
2026년 2월 제110회 총회 실행위원회 개정